

대법원 2016. 4. 12 선고 2015다73777 판결 [부당이득금반환]

---

### 재판경과

대법원 2016. 4. 12 선고 2015다73777 판결

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5. 11. 17 선고 2015나707 판결

### 전문

원고, 피상고인A

피고, 상고인대한민국

판결 선고2016. 4. 12.

원심판결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5. 11. 17. 선고 2015나707 판결

### 주문

상고를 기각한다.

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
N

### 이유

이 사건은 소액사건심판법 제2조 제1항, 소액사건심판규칙 제1조의2에 정한 소액사건인데, 피고가

내세우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 각 호에 정한 어느 사유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.

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,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

**재판장대법관**김창석

**대법관**이상훈

**대법관**조희대

**주심대법관**박상옥